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85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김용만·강준현·김남근

박상혁 • 민병덕 • 이인영

이정문 • 전현희 • 김승원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,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 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·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.8세에서 2024년 46.1세로,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,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

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본문 중 "34세"를 "39세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3조(정의)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
| 1. "청년"이란 19세 이상 <u>34세</u> | 1 <u>39</u> |
|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<u>다만</u> , | <u>세</u> |
|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| <u><단서 삭제></u> |
| 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 | |
|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| |
| <u>있다.</u> | |
| 2. ~ 4. (생 략) | 2. ~ 4. (현행과 같음) |